

장애·비장애인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남현경* ·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nalysis of Design Guidelines for Inclusive Parks as an Inclusive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Nam, Hyeon-Gyeong* · Kim, Ah-Ye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Since the 1960s, as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isabled advanced, the concept of integration for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has gradually developed as well. Despite efforts to improve various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ir satisfaction level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h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10 selected design guidelines dealing with disability in order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guidelines adaptable to inclusive park design, which can provide opportunities to access natural and cultural public space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 guidelines turn out not to have a balance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n terms of the usage of certain spaces and they heavily focus on physical disability in adult ages.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aspect, a specified design process is overlooked. Amenities/facilities and programs, layout and zoning are only mentioned while they are very specific about accessibility and mob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goal of inclusive parks, and to provide specialized guidelines for inclusive parks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Key Words: Inclusive Design, Disability, Park Design Guideline

국문초록

1960년대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의 개념이 점차 발달하였고 장애 관련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

Corresponding author: Ah-Yeo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2845, E-mail: ahyeonkim@uos.ac.kr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즉 접근성,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 공동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계획 측면에서는 조성 절차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고, 배치 및 공간구성,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내용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있어, 현재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통합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통합공원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관점에서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통합공원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합 디자인, 장애, 공원 설계가이드라인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피해로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의 장애인 수용능력이 포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탈시설화가 진행되었다(http://welfare24.net/ab-welfare_dic). 이러한 배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통합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통합은 비단 장애·비장애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립되는 집단 혹은 가치의 평화로운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으며(Creating Inclusive Playground Network, 2016), 이 중 장애·비장애 통합의 개념은 교육 현장에 선도적으로 도입되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의 개념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전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완전통합이 교육에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일반교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Mun, 2009). 그러나 완전 통합의 방식은 장애아동이 일반교육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단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절충하여 완전 참여와 의미 있는 수혜 정도로 통합교육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Kang, 2010).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이처럼 역사에 따른 인식 변화를 통해 바뀌어 왔으며, 계속해서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Byeon, 2008)'는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이유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47.5%)'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7년 후 조사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Kim, 2014)'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항목의 만족도에서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이가

42.12%였는데, 2014년에는 57.1%로 약 15% 가량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들이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누리는데 있어서도 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Nam, 2017).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보호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을 누릴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치료나 교육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여가 생활이나 문화 활동을 누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공원은 시민들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장애인 역시 공원을 이용할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통합의 개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터 수준에서 "통합놀이터(inclusive playground)"로 진행되고 있을 뿐, 통합의 개념을 공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최근 서울시(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여 통합공원의 개념과 흡사한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계획은 공원 단위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와 계획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공원의 일부를 개선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본격적인 통합공원의 개념과 계획/설계 과정, 그리고 상세 지침에 이르는 전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공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통합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된 바가 없다. 통합공원은 일반적인 공원 조성과정과는 이용자의 측면으로나 계획적 측면으로 볼 때 차별화된 계획원칙과 설계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마련을 위해 현재까지 발간된 접근성이나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 국내외 장애인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외부환경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여 통합공원 조성을 기준으로 현 단계를 진단하여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통합공원의 개념과 목표 설정, 계획 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에 이르는 통합 공원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탐구해야할 쟁점들을 명확히 하여 후속 연구에 필요한 구조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장애의 유형 및 관련 시설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http://www.korean.go.kr>)”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한 상태인 ‘장애-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특정 과제 수행에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인 ‘장애-무능력(disability)’,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된 상태를 말하는 ‘장애-불이익(handicap)’이 그 개념이다(<http://www.childcare.go.kr>). 장애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5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주거지원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이나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한다. 둘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다. 셋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http://www.easylaw.go.kr>). 그 외에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유통 대행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까지를 복지 시설로 보고 있다. 복지시설 중 본 연구 내용과 밀접한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시설군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들 수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은 점자나 수화 서비스 또는 신체적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가 혹은 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Nam, 2017).

Table 1. Types of the disability defined i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type	Disability characteristics
1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The disabled having physical functions who have eternal disability in arm, legs, or torso
2	Brain-disabled person	A person having difficulty walking and in everyday life because of physical disability broken out by organic lesion of brain like cerebral palsy, traumatic brain damage, or stroke
3	Blind person	A person whose worst eyesight is below 0.02, a person whose best eyesight below 0.2
4	Hearing-impaired person	A person whose hearing loss of both ears is more than 60 decibels each
5	Speech-language disorder	A person having eternal disability in voice and language function
6	Intellectual disorder	A person whose intellectual ability development is insufficient and imperfect as mental growth being delayed permanently and having difficulty doing own things and adapting to social life
7	Autistic disorder	A person who needs somebody's help because the person has difficulty in daily and social
8	Mental disorder	Life by autism and disabilities about language followed by untypical autism, self-control about body expression, and society adaption and skills
9	Kidney patients	A person who needs somebody's help because the person has difficulty in daily and social life by continuous schizophrenia, schizophrenia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disabilities about emotion control, action, thinking function skills according to repetitive depressive disorder
10	Cardiac dysfunction	A person having difficulty in daily life because of continuous blood dialysis or peritoneal dialysis caused by kidney malfunction or eternal disability in kidney
11	Respiratory dysfunction	A person having difficulty in daily life because of disability with breathing caused by heart malfunction
12	Liver disabilities	A person having difficulty in daily life because of disability with liver caused by liver's chronic malfunction and the following complications
13	Facial disorder	A person having difficulty in social life because of transformation or malformation on face
14	Colostomy or urinary fistulas	A person having difficulty in daily life who had surgery of intestinal fistula or urinary fistula because of evacuation disorder or urination disorder
15	Epileptic disorders	A person who needs somebody's help in daily and social life because of brain cells disorder caused by epilepsy

2. 통합, 통합디자인, 통합공원의 개념

통합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공간, 세대, 인종이나 민족, 장애와 비장애 등 사회적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Creating Inclusive Playground Network, 2016),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합의 개념은 이 중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게다가 Jeong(2003)은 사람들이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다고 보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에게 맞춰줘야 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Lee(2000)는 “인간은 개인차에 따라 특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장애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합의 개념은 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환경의 통합 디자인의 전제가 된다.

장애인을 고려한 공간의 디자인 개념은 시대에 따라 대응하며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접근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생애주기 디자인(Lifespan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순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였다(Table 2 참조).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활용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197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였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Lee and Kwon, 2009).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포용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 디자인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합 디자인

이 “영역의 협력적 작업에 의한 과정”이라는 의미의 ‘integrated design’으로 사용(Lee *et al.*, 2012)되거나,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융합하여 최적의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방법(Kim, 2005)”이라는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통합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앞에서 언급한 통합 디자인(integrated design)과는 다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합 디자인에서 통합의 의미는 과정이나 방법이 아닌 ‘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사회를 통합하려고 시작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디자인의 개념과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모두가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 Creating Inclusive Playground Network(2016)는 통합놀이터의 통합을 말할 때 ‘incl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놀이터에서 놀되, 동등한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통합 디자인은 ‘Inclusive Design’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의 참여를 보장받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Nam, 2017).

본 연구의 통합공원(Inclusive Park)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디자인(Inclusive Design) 개념을 적용한 공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합공원은 장애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을 의미하며,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통합을 구현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절차 혹은 조성과정부터 계획과 설계 지침, 그리고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와 문헌을 통해 통합디자인에 관련한 내용을

Table 2. Universal design concept and its relevant precedents

Concept	Content
Barrier-free design	Design for disabled people and old people, especially for wheelchair users to move freely
Accessible design	Design for convenience, safety and availability for compensating for lack of ability of users and making to satisfy demands of special users
Adaptable design	Design for accepting various and changeable demands of users
Lifespan design	Design to make environment for initially accep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occurred during the human aging process
Universal design	Design for users who have various physical features and abilities

Source: Lee and Kwon, 2009: 240.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통합공원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국내의 가이드라인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공원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환경 관련 항목을 발췌하였다. 셋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으로 나누어 세부항목마다 기호법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내용 없음'은 세부항목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이며, '○=소극적 제시'는 세부항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언급 횟수가 한두 번에 그칠 때, '●=중간'은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그 횟수가 가이드라인 전체가 아닌 일부일 때, '●=적극적 제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분석 세부항목을 고려하고 있을 때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분석자료 선정

분석 대상은 국내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으로 한정하였다. 아직 통합공원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통합공원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 가이드라인 중 공원 조성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목적이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통합공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라도 주제가 다른 경우에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의 총 10가지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 국가, 발행기관, 발행연도,

가이드라인의 쪽수, 가이드라인의 내에서의 공원 항목 유무를 표로 정리하였다(Table 3 참조).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이하 'A'라고 한다)'은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으로 미국 장애인 표준디자인 규격이라고 부른다. 이는 포괄적인 지침으로 공간 외에도 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된 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표준디자인 규격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California state parks accessibility guidelines(이하 'B'라고 한다)'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의 접근성을 규정하는 지침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또한 A의 세부 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Barrier-free design guide'(이하 'C'라고 한다)는 대부분 주차 및 건축물의 실내에 대한 지침 내용이 있는데, 뒷부분 부록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uidelines for barrier-free design of Ontario government facilities(이하 'D'라고 한다)' 역시 무장애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C와 달리 1장에서 공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exterior area)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Barrier-free community gardening in Waterloo region'(이하 'E'라고 한다)은 분석 대상 가이드라인 중 유일하게 가드닝을 포함하고 있다. 워털루시의 다양한 커뮤니티 가든이 이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가드닝을 할 때 필요한 공간의 여건에 대한 지침과 가드닝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중 가드닝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감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식물을 감각별로 제안한 점이 흥미롭

Table 3. Guidelines including contents regarding outdoor spaces

	Guideline	Country	Publishing office	Year	Page	Contents related to parks
A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USA	United States Government	2010	275	×
B	California State Parks Accessibility Guidelines	USA	California State Park	2015	290	○
C	Barrier-free Design guide	Canada	Alberta Municipal	2008	122	×
D	Guidelines for Barrier-free Design of Ontario Government Facilities	Canada	Ontario	2014	37	×
E	Barrier-free Community Gardening in Waterloo Region	Canada	Waterloo Region	2013	23	×
F	Barrier-free Design Illustrated Guide	Canada	City of Whitehorse	2010	42	×
G	Accessibility Design Guid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for Australia's Aid Program	Australia	Australia Government	2014	139	×
H	Tokyo Town development of welfare ordinance, 'Park'	Japa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21	○
I	Barrier-free Certification Criteria, 'Park'	Republic of Korea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2	197	○
J	2012 Installation Manual of Disabled Facilities of Public Facilities	Republic of Kore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	229	○

Source: http://www.ada.gov/2010ADASTandards_index.htm, <http://www.parks.ca.gov>, <http://www.safetycodes.ab.ca>, <http://www.infrastructureontario.ca>, <http://chd.region.waterloo.on.ca>, <http://www.community.gov.yk.ca>, <http://dfat.gov.au/about-us>,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 <http://bf.koddi.or.kr>, <http://disability.seoul.go.kr>

다고 볼 수 있다. 'Barrier-free design illustrated guide(이하 'F'라고 한다)'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대한 일러스트 가이드로 대부분 건물에 대한 지침이지만, 일부 항목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Accessibility design guid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for Australia's aid program(이하 'G'라고 한다)'은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설명하는 Part A와 11가지 항목의 지침을 부록 형식으로 엮은 Part B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은 바로 적용 가능한 지침보다는 항목별로 디자인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도입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Part B는 통합교육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동경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 공원편(이하 'H'라고 한다)'은 출입구, 이동로, 계단, 경사로, 전락 방지, 휴게소 6가지 요소에 대한 수치와 설치 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국내 가이드라인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공원편(이하 'I'라고 한다)', BF(Barrier Free)인증의 항목과 평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에서는 BF(Barrier Free)인증에 대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원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2012 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이하 'J'라고 부른다)'은 2002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로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2012년 발간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원 부분에는 출입구, 주차장, 매표기, 보행로, 계단 등 13가지 항목 아래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3. 분석의 틀

도시공원의 역할과 가치는 과거에 자연적 풍경 속에서 정적인 위락 중심의 기능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동적인 위락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Yang, 2016). 공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은 일정 부지에 계획/설계안을 거쳐 실제 공사에 이르는 계획자의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획 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통합공원의 경우, 이용자의 특수성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틀을 크게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측면의 세부항목으로는 이용자 측면에서 대상의 비중, 장애 종류 및 유형, 생애주기,

전인적 영역을 분석하고, 계획 측면에서는 조성절차, 배치 및 공간구성, 접근권 및 이동권,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주목하였다(Figure 1 참조).

1) 이용자 측면

첫 번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주체로서 내용이 구성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다루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공원 이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에 있어 마찰과 상충이 일어나고 있고, 궁극적인 통합의 개념에서 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이용주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가이드라인이 공원 이용에 있어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이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나 지침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장애의 유형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언급한 15가지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이 해당되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다.

셋째,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요소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장애인의 생애주기(life cycle)는 일반인의 생애주기와는 같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필요 요소는 나이와 상관없이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재활의 기술과 특수교육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면서 장애인의 나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앞으로 만들어질 장애 관련 지침은 생애주기에 따른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Choi(2010)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보호자가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유아기와 제도권 교육의 장에서 학교와 가정생활을 병행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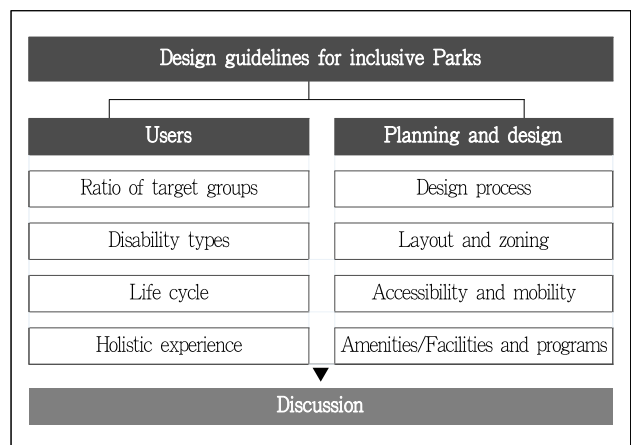


Figure 1. Study process

되는 학령기, 이후 거취에 따라 달라지는 성인기”로 나누고, 보호자의 동원 정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애인은 공원의 이용 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hoi(2010)의 생애주기 구분을 적용하였다.

넷째, 가이드라인이 전인적 차원에서의 경험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Kim(2014)은 “전인은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한, 원만한 인간이며, 전인적 성장은 전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그 중의 어느 것에 편과적으로 치중함이 없이 골고루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이며, 전인적 성장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지적 영역은 크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영역은 모든 것에 적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영역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공원은 신체적 활동을 촉진시키며, 다양한 자연요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사회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최대한 전인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므로, 통합공원은 단순한 접근성의 차원이 아닌 이용자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경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계획 측면

첫째, 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절차에 대한 언급의 유무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공원의 경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공원 조성 시 단계별 수행할 내용이 지침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침에서 공원조성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통합공원이 일반적인 공원 조성 단계를 준용하더라도,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갈등 요소가 있고, 이용자의 참여과정이 중요하며, 특수 시설물에 대한 각종 인증과정이 포함되며,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이 절실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계획안 도출에 있어 배치 및 공간구성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원계획은 도시의 전체적 차원에서의 배치와 다양한 차원에서 공원 입지를 적절히 선정해야 하며,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공원 입지 결정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Sung and Shin, 2005). 장애인이 공원을 이용할 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많은 장애인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접근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은 전반적인 공원 체험과 배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경사도나 핸드레일 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점을 공간적으로 최소화하는 계획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접근권 및 이동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내부와 외부공간 사이의

연속적, 체계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Roh, 2011). 접근권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접근권 및 이동권을 공원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공원은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원 시설이 필요하므로 시설물에 대한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공원 시설의 종류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 밖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시설의 배치는 공원의 체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통합공원에서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원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원의 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경향으로 볼 때, 공원 운영의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합공원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Table 4 참조).

IV. 분석 결과 고찰

1. 이용자 측면

1) 장애와 비장애의 비중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비장애인을 언급하지 않아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Table 5 참조). 무장애,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합공원의 기초로 활용하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차별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소극적으로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J의 경우, “다른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

Table 4. Analytical framework

	Category	Sub-category	Reference	Content
Use	Target groups	Us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Whether the non-disabled and the disabled are considered as equivalent subjects
	Disability types and category	Physical disabilities / mental disabilities	Creating an Inclusive Playground Network(2016)	Whether physical disability and mental disability are considered evenly
	Life cycle	Preschool age / school age / adulthood	Choi(2010)	Whether the contents were presented and distinguished according to stages of the life cycle.
	Holistic experience	Intellectual / emotional / social	Kim(2014)	Whether three fields were met
Planning and design	Design process		Creating an Inclusive Playground Network(2016)	Whether there are contents about procedures of making a park
	Layout and zoning		Sung and Shin(2005)	Whether outdoor space arrangement guidelines by functions according to usage and laws are mentioned
	Accessibility and mobility		Roh(2011)	Whether there are access and mobility rights
	Amenities / facilities and programs		Enforcement Rule of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Whether resting, entertainment, exercise, convenience facilities, park management elements, urban agriculture, and others are suggested and program in the park

Table 5. User-related guidelines

Guideline	Ratio of target groups		Disability types and category		Life cycle			Holistic experience		
	The disabled	The non-disabled	Physical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E	●	×	●	○	×	×	●	○	○	○
F	●	×	●	×	○	×	●	×	×	×
G	●	○	●	○	○	●	●	○	×	○
H	●	×	●	×	○	×	●	×	×	×
I	●	×	●	×	○	○	●	×	×	○
J	●	●	●	×	○	×	●	×	×	●

Source: (×= none, ○=passive, ●=average, ●=active)

도록 배려하여 설치한다”,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인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항목에서 비장애인들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다. B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장비들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행하는 장애인이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1,200mm의 폭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로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가 비장애인과 동시 통행 혹은 교행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 공간의 이용자 그룹에 대해 동시에 생각하는 태도는 전반적인 계획지침과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처럼 비장애인과 공동 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항목이 일부 파악되었으나, 그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2) 장애 종류 및 유형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대부분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에 치중된 양상을 보였다. 정신적 장애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한 점은 현재 장애인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C, E, G에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원론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C를 예로 들면 감각장애와 발달장애(sensory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한다는 한 문장에 그치

고 있다. 물론, 정신적 장애는 공간 가이드라인으로 다루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의 지적 수준이 어린이에 가깝고, 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점 등(Creating Inclusive Playground Network, 2016), 실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들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갈등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들이 공원에서 누릴 권리의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생애주기

분석한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성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공간의 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와 학령기를 고려한 내용은 찾아보기 드물어 지침들은 장애인의 연령별 특성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A는 일부 항목에서 이용 시설의 높이를 3~4세, 5~8세, 9~12세의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F는 상세한 수치를 서술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위해 일부 수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A와 F가 생애주기의 신체적 차이를 언급하였고, G가 학령기 장애인들의 교육 환경을 다루면서 일부 제시된 학교의 외부공간 항목을 생애주기를 고려한 항목으로 분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4) 전인적 체험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지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의 체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다음의 몇몇 항목은 주목할 만하다. B는 "Educational Nature Trails"에서 지적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조성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Play Areas" 항목에서 아이들 사이의 사회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E의 경우, 장애인들의 정원 조성 과정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

에서 그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2. 계획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 분석

1) 조성절차

공원의 조성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G가 유일하다. 검토한 10개의 가이드라인 중에 공원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는 B, H, I, J도 조성절차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공원 조성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통합공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한 공간의 치수와 시설물 기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고, 이용자의 특수성에 따라 보다 섬세한 조성과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은 처음부터 무장애 공원 혹은 통합공원을 조성하려는 목적보다는 기존 공원 내의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의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공원조성 절차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외적으로 G의 경우, 공원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 계획과 투자 부분부터 상세하게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추후 통합공원 조성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때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배치 및 공간구성

분석 대상 중 배치 및 공간구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Table 6 참조). 공간배치(layout) 혹은 zoning은 공원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작업으로, 분석 대상 가이드라인이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계획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공원의 경우, 장애인 시설과 비장애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Table 6. Planning and design aspect

Guideline	Design process	Zoning	Rights to access and move	Park amenities, facilities and program	
A	×	×	●	●	entertainment, sports
B	×	×	●	●	rest, entertainment, convenience
C	×	×	○	×	none
D	×	×	○	○	convenience
E	×	×	○	○	landscape, culture, farming
F	×	×	○	○	convenience
G	○	×	●	○	convenience, entertainment
H	×	×	●	○	convenience, park management
I	×	×	●	●	entertainment, park management
J	×	×	○	●	rest, convenience, park management

(×=none, ○=passive, ●=average, ●=active)

항목은 상충을 피하고, 통합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공원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간구획과 입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여 시설설치기준에 그치는 현재 장애인 시설 관련 설계지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3) 접근권 및 이동권

대부분 가이드라인은 접근권 및 이동권, 접근과 이동을 위한 보도, 계단 등에 대한 세부설계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공원 전체 동선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A와 B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명칭 자체가 접근성(accessibility)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 역시 접근과 이동의 세부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 내부에 한정되어 있거나, 도로의 재료나 경사 등 세부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대상지로의 이동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단, B에는 공원 내 요소간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공간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대규모 공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공원의 주차장에서부터 해당 공간까지 이동하는 전반적인 동선과 공원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체험 동선에 대한 논의는 공공공간에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설물 및 프로그램

분석한 가이드라인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공중전화, 음수대, 전망대 등의 일반적인 편의시설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과 공원관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 많았으나, 유희시설은 어린이 놀이 공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대체로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하고 있어, 공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등의 내용이 많았다. 그 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미비하였다. C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항목이 전혀 없었다. 기존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공원 내 조경시설에 대한 지침이 없어 이러한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B에서 유일하게 'Educational Nature Trails' 항목에서 산책로를 통한 자연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분석의 종합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10개의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장애인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은 통합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분석한 Table 5를 보았을 때 특정 요소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매우 소극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공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상호 교류하며, 공간을 이용하자는 취지를 가지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기계적으로 1:1의 비중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간을 함께 쓰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간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신체적 장애에 치우쳐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에 편중되어 있다. 장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신체적 장애인에 못지않게 공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들의 행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생애주기 항목과 관련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은 성인의 신체적 조건과 요구 내용에 맞춰져 있었다.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성인만이 아니므로, 유아기와 학령기 장애인들의 신체적 조건과 그 시기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공원의 전인적 체험과 관련하여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은 공원의 궁극적 목표로부터 세부 지침에 이르기까지 공원이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원이 주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기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계획적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가이드라인이 공원 조성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기존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이 건축물 중심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공원에서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통합공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원에 비해 섬세한 계획과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배치 및 공간구성에 대한 항목 역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애인의 편익에 대한 인식이 시설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체험 혹은 조경시설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으로 보아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목표와 구성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접근권 및 이동권 역시 경사로나 계단 등의 치수와 같은 세부적인 항목 서술에 그쳐 외부에서 공원으로 접근하는 도시적 관점의 내용

이나, 공원의 전체 동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반증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통합공원의 관점에서 국내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시설 관련 10개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구성 체계를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를 규명하여 통합공원 조성에 필요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공원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공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합의 방법과 구현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건축물 혹은 시설물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고, 최소한의 접근권과 이동권 중심에 그치고 있어,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용 편의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는 공공공간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전인적 체험을 보장해 주며,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공공간을 조성한다는 더 큰 목표 아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가이드라인의 편중 현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원은 장애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이용자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와 성인 연령에 맞춰진 가이드라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이인 장애인들이 공공공간에서 여러 마찰을 겪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과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인정하고, 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소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원은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들의 협업이 요청되며, 여러 부처에 걸친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결과물 중심의 기존 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과 공간에 대한 균형 있는 내용 구성이 중요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게 자연과 공공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앞으로 통합의 개념에서 공원 조성 및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통합공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적 공공공간의 확산을 통해 도시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문화의 생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 조성을 위해 장애인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의 차원에 대한 항목을 다루지 못한 점과 보다 많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남긴다. 또한 통합공원에 관한 개념과 목표와 가치, 구체적인 공간구성과 조성절차를 다루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Byeon, Y. C.(2008)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 Choi, K. H.(2010) Lives and Identity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An Analysis of the Life Cycle of Children-,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3. Creating Inclusive Playground Network(2016) Disabled-accessible Inclusive Playground Manual,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s for All.
4. Jeong, C. G.(2003) Research on the Realization Method of the Social Conformative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s Cas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ncheon.
5. Kang, H. J.(2010) An effect of "Friend Program" on infants' attitudes of accepting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2(1): 225-245.
6. Kim, I. C.(2005) (A)Study on the Paradigm shift of Communication Design and the Fusion Design as a Subsequent Strategy, Ph.D. dissertation, Dongseo University, Korea.
7. Kim, M. J.(2014) Growing High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s the Whole Person Through Project <Tale>,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8. Kim, S. H.(2014)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9. Lee, H. J.(2000) Integration within general school education Activation Plan, 2000 Responsible for National Education Policy Challenges of Integrating Special Class Teacher Workshop Materials.
10. Lee S. W., R. R. Kim, S. Y. Kim, I. K. Seo, J. W. Ahn, D. Y. Lee, E. J. Lee and Y. J. Hong(2012)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 of integrated design approach -A case study on design processes in design fir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5(3): 39-53.
11. Lee, Y. M. and O. J. Kwon(2009)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es on universal design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8(6): 239-248.
12. Mun, E. H.(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Integrate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orea.
13. Nam, H. G.(2017) The Assessment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n Inclusive Playground as Inclusive Environment of Handicapped Children and Non-Handicapped Children -Focused on 'Kkum-Teul Inclusive Playground' in the Seoul Children's Grand Park-, Master's Thesis.

- University of Seoul, Korea.
14. Roh, S. S.(2011) A Study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 Utilization and User Satisfaction in the Neighborhood Park.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5), Survey and Schematic Planning for Barrier Free Parks in Seoul.
 16. Sung, H. C. and J. Y. Shin(2005) Strategies to improve parks' accessibility in city -Focus on Gyeonggi-do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3(2): 83-91.
 17. Yang, Jung-Soon(2016) The Post-Occupancy Evaluation of Landscape Lighting Design in Urban Parks,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18.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Pregnant Women, etc.(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orea.
 19.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Korea.
 20.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복지법), Korea.
 21. Enforcement Rule of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orea.
 22. <http://bf.koddi.or.kr>(Barrier Free, accessed in 2017. 3)
 23. <http://chd.region.waterloo.on.ca>(Region of Waterloo Public Health and Emergency Services, accessed in 2017. 3)
 24. <http://dfat.gov.au/about-us>(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ccessed in 2017. 3)
 25. http://www.ada.gov/2010ADASTandards__index.htm(ADA.go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accessed in 2017. 3)
 26. http://welfare24.net/ab-welfare_dic(Better Social Welfare World, accessed in 2016. 12)
 27. <http://www.childcare.go.kr>(I-sarang, accessed in 2017. 3)
 28. <http://www.community.gov.yk.ca>(Yukon Government, accessed in 2017. 3)
 29.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0&ccfNo=4&cciNo=3&cnpClsNo=1&menuType=cnpcls#>(The Easy Legal Information Service, accessed in 2017. 3)
 30.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Bureau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ccessed in 2017. 3)
 31. <http://www.infrastructureontario.ca>(Infrastructure Ontario, accessed in 2017. 3)
 32. <http://www.korean.go.k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ccessed in 2017. 3)
 33. <http://www.parks.ca.gov>(California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accessed in 2017. 3)
 34. <http://www.safetycodes.ab.ca>(Safety Codes Council, accessed in 2017. 3)

Received : 02 May, 2016

Revised : 30 June, 2016 (1st)

03 April, 2017 (2nd)

Accepted : 03 April, 2017

4인익명 심사필